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23일, 김미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미애의원)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이더라도 군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면서, 그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기고, 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시점을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려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병역의무의 수행이나 자녀 출산·양육으로 가입 이력을 쌓지 못한 기간을 보충함으로써 군복무와 출산이 노후소득 보장성을 약화하는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주된 부분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각 크레딧의 효능감을

단기에 가시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산입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경우 각 크레딧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 제49조 각 호의 급여에 대하여 군복무크레딧 또는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18조 및 제19조의 적용례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산입 시점을 각각 앞당기는 것과 관련하여 연금보험료 사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단기간 내 추가재정소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복무기간 전체’를 군복무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15개월’의 출산크레딧을 인정하되, 각각의 산입 시점은 현행과 같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